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브리핑
(2021.01.11.)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

2021. 1.

목 차

I 지원대상 관련

1.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1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2
3. 버팀목자금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여부 4
4.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6
5.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대상 소상공인이란 7
6. 새희망자금 수혜자 버팀목자금 지급 7
7.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함 8
8.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령 시 추가 지원 여부 8
9.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8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여부 8
11. 임시 휴업자 또는 세금체납자 지원 여부 9
12.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9
13.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 지원 여부 9

II 자금신청 관련

14. 신청은 언제부터 10
15. 대상자 문자 연락을 받았는데 신청기간은 11
16. 신청 및 지원 절차는 11

17. 신청 준비서류 및 문의처는	13
18. 문자연락을 받아 신청했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13
19.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14
20. 편의점의 매출액 산정시 담배 매출 제외 필요	14
21. 편의점은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 지급	14

III 지원금액 관련

22.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와요	15
23. 복수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영위 시 지급금액은	15
24. 1월중 지급 가능 여부	15
25. 대표자 본인 계좌만 수령 가능 여부	15

IV 매출감소 판단 관련

26.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17
27. 지난해 매출은 없고 올해 매출이 있는 경우	17
28. 올해 개업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17
[붙임1] 지역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현황	18
[붙임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9

I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		무관	200만원
일반업종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새희망자금 수혜자 우선지원	○	100만원

○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관련 참고

< 지원 대상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단위 : 만개)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편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붙임1,2 참조)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관련 참고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에 개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개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인 미만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0억원 이하	5인 미만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용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돼 지원대상입니다.
-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148개)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표준산업분류	업종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4.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입니다.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도 제외대상입니다.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대상 소상공인이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시행한 조치중 1개 시점에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할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포함하여 버팀목자금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지원대상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편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m ² 이상) 등	숙박시설

* 기초지자체에서 2.5단계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도 포함(붙임 1, 2참조)

6.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既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우선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 되오니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21.5월)

- 새희망자금을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으나, 버팀목자금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구분된 경우 매출액 감소 무관하게 지급대상 포함

7.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차 신속지급대상(문자발송)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국세청 및 지자체 확인을 받아 지급대상 DB를 확정된 것으로 자료 수집과정에서 일부 누락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2.1~)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발급 → 온라인(버팀목 자금.kr)으로 확인지급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원금 지급

8.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9.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버팀목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프리랜서 유형은, 중기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영세자영업자(사업자 등록 有)' 유형은, 버팀목 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버팀목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캐디

11.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2020년 11월 30일까지 개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12.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부의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II

자금신청 관련

14.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 1차 신속지급 (1.11 ~)

○ 지원대상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②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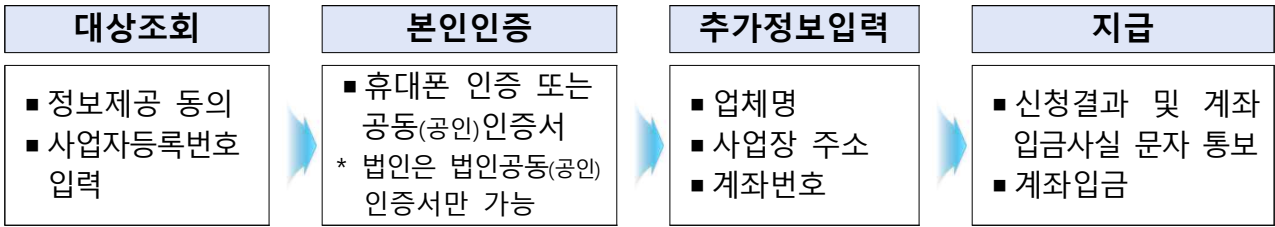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15. 문자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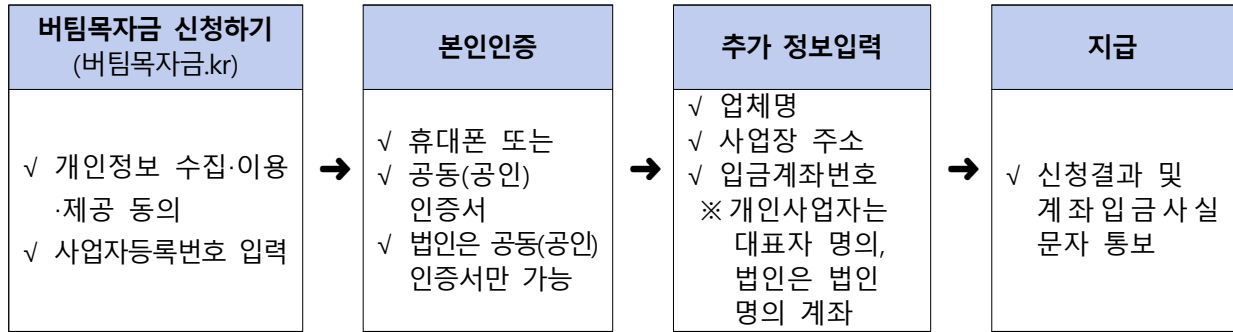
신속지급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은 1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16.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속지급(지원대상 문자 받는 자) 온라인 신청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절차 >



□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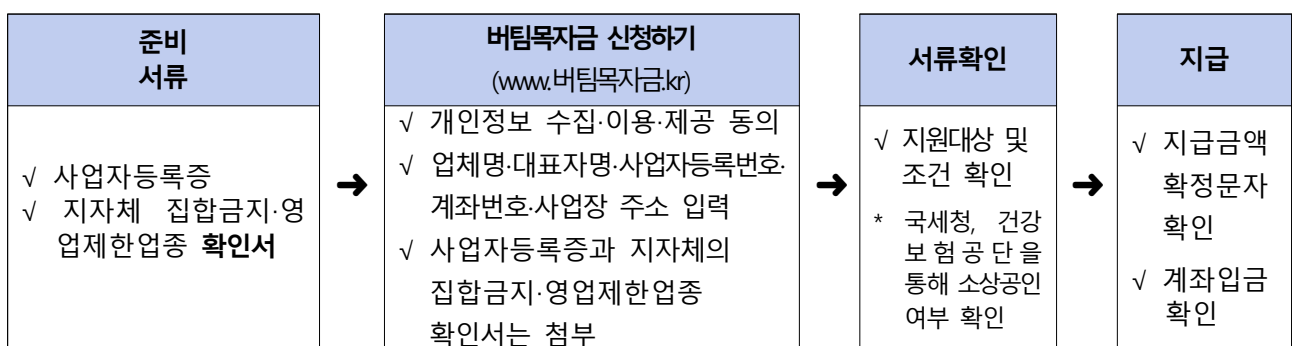
-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받은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 비영리단체 등 위임장, 확인서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 → 별도 신청안내 문자송부 예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공동대표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수신자 확인지급 온라인신청 절차 >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지급 온라인신청 절차 >



17.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

구 분		준비서류	비고
일반 업종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	대리인 위임장	자금 신청 문자 사전 발송
	계좌압류 사업장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문의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09~20시 채팅상담] 이용
 - 전화 문의 :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18.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19.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20. 편의점 경우 담배 매출액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소매인 영업소는 50m 이상 거리를 두고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주변 편의점, 슈퍼보다 집객 유인효과가 있어 매출 증대에 유리하고, 담배소매에 따른 마진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할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편의점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운영함에도 점포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 편의점 업종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은 없고, 편의점주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일반소매업, 음식업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 편의점을 음식업으로 등록한 곳의 경우 음식점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점검, 위생교육, 건강진단(보건증), 위생점검 등 영업신고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편의점별 업종 등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Ⅲ

지원금액 관련

22.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일반업종 기준으로 매출요건 등이 맞으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확인이 되면 차액(100, 200만원)에 대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23.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20년 새희망자금 기수혜 사업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1월 중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누락자, 공동대표 사업장 등은 지자체 확인서 및 위임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3월중* 별도공고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2.25일) 이후 정리 기간 필요

25.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IV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26.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 올해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 매출 감소 판단기준 >

구 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개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0년 연간 매출액 * '21년 매출 신고 시 확인	'19년 연간 매출액
'20년 개업자		'20년 12월 매출액	'20년 9~11월 월평균 매출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 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7.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 '20.10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버팀목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1

지역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현황(11.24~1.5 기간중 최고 단계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최고 단계 11.24~1.5 기간중	중 점 관 리 시 설									일 반 관 리 시 설										연말 실외 스포츠 부대시설포함	연시 밀폐외 스킨프 장	특별 숙박 시설	방역 파티룸				
				유시 5층 홍실 중	직판 매보 관	노래 습 연장	실내 스탠 공연 장	식당	카페 무인 포	출입 검	실내 유실	학원· 교소	직업 기 지 연 정	업 관 등 발 과	결 혼 식	장 례 장	목 욕 업	공 장	PC방	영 화 관	오 락 실· 멀 티 방 등	독 서 실· 스 디 카페					놀 이 공 원· 터 파크	이 · 미 업	중 합 소 매 업 300㎡ 이 상	
1	서울	-	2.5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금지
2	경기	-	2.5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금지
3	인천	-	2.5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금지
4	대전	-	2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5	세종	-	2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6	충북		2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7	충남	당진 그 외	2.5 2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8	광주	-	2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9	전북	김제 그 외	2.5 2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10	전남	-	2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11	대구	-	2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12	경북	포항경주 그 외	2.5 2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13	부산	-	2.5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금지
14	울산	-	2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15	경남	거제 그 외	2.5 2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16	강원	동해 그 외	2.5 2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제한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금지	제한 제한	금지 금지
17	제주	-	2+α	금지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금지	제한	제한															금지		제한	금지

붙임 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1.1.4. 시행 기준)

※ 공통조치 :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번	시도	시군구	기간/지역	집합금지 영업제한 범위 관련 특이사항(+α 등)
1	서울	전지역	11.24~12.7(2), 12.8~1.17(2.5)	2.5단계 유지,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2	경기	전지역	11.24~12.7(2), 12.8~1.17(2.5)	2.5단계 유지,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3	인천	전지역	11.23(1.5), 11.24~12.7(2), 12.8~1.17(2.5)	2.5단계 유지,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4	대전	전지역	12.8~1.17(2)	
5	세종	전지역	12.8~1.17(2)	
6	충북	음성	11.25~12.7(1.5), 12.9~1.17(2)	
		그 외	12.9~1.17(2)	
7	충남	당진	12.8~12.14(2), 12.15~12.28(2.5), 12.29~1.17(2)	
		천안, 아산	11.5~12.7(1.5), 12.8~1.17(2)	
		논산	11.24~11.30(1.5), 12.8~1.17(2)	
		그 외	12.8~1.17(2)	
8	광주	전지역	11.19~12.6(1.5), 12.7~1.17(2)	
9	전북	김제	11.23~12.7(1.5), 12.15~12.28(2.5), 12.29~1.17(2)	
		무주	11.23~12.28(1.5), 12.29~1.17(2)	
		그 외	11.23~12.7(1.5), 12.8~1.17(2)	
10	전남	순천	11.20~1.17(2)	
		나주, 군산	11.24~11.26(1.5), 11.27~1.17(2)	
11	대구	전지역	11.24~12.7(1.5), 12.8~1.17(2)	
12	경북	포항	12.8~12.29(2), 12.30~1.3(2.5), 1.4~1.17(2)	
		경주	12.8~12.29(2), 12.30~1.3(2.5), 1.4~1.17(2)	
		그 외	12.8~1.17(2)	
13	부산	전지역	11.27~12.14(2), 12.15~1.17(2.5)	2.5단계 유지,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14	울산	전지역	11.27~1.17(2)	
15	경남	거제	11.26~12.7(1.5), 12.8~12.20(2), 12.21~1.3(2.5), 1.4~1.17(2)	
		창원	11.26~12.7(1.5), 12.8~1.17(2)	
		진주	11.25(1.5), 11.26~1.17(2)	
		하동	11.19~11.20(1.5), 11.21~1.17(2)	
		그 외	11.26~12.7(1.5), 12.8~1.17(2)	
16	강원	동해	12.8~12.19(1.5), 12.20~1.3(2.5), 1.4~1.17(2)	
		춘천* 등	11.10~12.7(1.5), 12.8~1.17(2)	
		태백** 등	12.8~12.14(1.5), 12.15~12.27(1.5), 12.28~1.17(2)	
17	제주	전지역	12.4~12.17(1.5), 12.18~1.3(2), 1.4~1.17(2+α)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은 집합금지, 골프장 4명 이하로 제한

* 춘천, 원주, 영월, 정선, 철원, 강릉·평창(12.18.-), 삼척(12.20.-), 횡성·홍천(12.23.-)

** 태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12.21.-)